ESG위원회 규정

2022. 3. 29.

SK 주식회사

제 1 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ESG위원회(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기 능)

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 중 1인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 3. 29.>

②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 3. 29.>

제 5 조 (소 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사전검토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을 이사회 보고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

1. 회사의 중장기 전략
2. <삭제 2022. 3.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

1.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출자액의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자산의 취득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5. 회사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8. 연간 경영계획(KPI 포함)의 수립 및 평가 <신설 2022. 3.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회계 및 재무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

1. 중간배당,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신주의 발행
4. 정관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5.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6. 자본 감소
7.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 결정
11. 회사 주요자산(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단, 출자지분 처분의 경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12.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외 차입계약(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 및 3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13.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또는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단,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기타 이사회 결의사항 중 회사의 전략,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제 8 조 (토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1. SK그룹(이 규정에서 'SK그룹'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SKMS를 근간으로 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회사들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을 의미함)의 주요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
3. 회사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
4. 기타 회사의 전략,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

제 9 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조직)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PM부문]으로 한다.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 11 조 (의사록)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2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21. 3. 30.)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